

朝鮮時代 서울의 生活風俗史 研究方法 序說

張 哲 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6) 生業活動을 위한 空間 |
| 2. 民俗誌·風俗誌로서의 地理誌 | 4. 人間과 生活風俗과 그 認識 |
| 1) 地理誌와 編制 | 1) 戶口 및 人口의 推移 |
| 2) 地理誌의 內容에 대한 分析 | 2) 身分에 따른 儀仗과 禁制 |
| 3. 空間과 그 認識 | 3) '風俗' 條의 內容 |
| 1) 地脈과 水脈의 認識 | 5. 時間과 그 認識 |
| 2) 水脈과 部坊制度 | 1) 歷史的 事件 |
| 3) 王宮과 公署의 위치 | 2) 革廢公署의 分析 |
| 4) 住宅 및 同宗村落 | 6. 맺 음 말 |
| 5) 信仰空間과 그 認識 | |

1. 머리말

민속학과 인류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화를 生活樣式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生活文化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찌기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발달시켜 온 문화인류학계에서는 최근에 문화를 “그 자체가 人間集團이 環境과 연관시켜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조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慣習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성분으로서 行爲的, 認知的, 物質的 측면을 들고 있다.¹⁾ 이 정의는 그대로 민속학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인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로 받아 들여도 무방하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行爲와 생각인 生存方式에 대한 해석을 조직할 수 있는 관습적 태도인 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이 정의에서 생활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環境, 人間과 함께 組織이라는 3개의 요소와 함께 행위·생각·관습이라는 생활문화의 성격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3개의 구성요소가 어느만큼의 지속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위와 생각과 관습도 달라지며, 그에 따라 생활문화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집단의 환경에 대한 행위와 생각, 그리고 관습은 말하자면 生存方式과 說明方式, 그리고 傳承方式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이 다를 때에는 다양한 생존 방식과 함께 그에 알맞는 타당한 설명방식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생존방식과 설명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승방식을 갖게 된다. 이 가운데에서 어느 특정한 생존 방식과 설명방식이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서 관습화되어 전승될 때, 우리는 그것을 '生活文化' 또는 '風俗'으로 부른다. 따라서 생활문화와 풍속은 구성원의 생존을 위하여 발달시킨 관습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일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관습적 행위유형과 의미는 客觀的으로 組織化되어 社會的으로 制度化되는 것이다. 관습적 행위와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므로써, 그 문화와 풍속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 사회의 생활문화와 풍속은 같은 시대일지라도 특정한 環境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환경을 地理環境(physical environment)·生物環境(biotic environment)·社會環境(social environment)으로 구분한다면²⁾, 그 지역의 생활문화는 그만큼 많은 다양한 행동유형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 사회의 생활문화가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유형을 部分文化(sub-culture)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생활문화 또는 풍속이 갖는 사회적 상황, 즉 '空間·人間·時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³⁾

이 사회적 상황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설명,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의미의 시간적 차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사회적 상황은 삶의 주체가 되는 인간과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삶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공간-인간-시간은 바로 사회적 상황과 함께 생활문화를 구성하는 3요소이다. 그러나 이 3가지의 요소가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이 바로 생활문화는 아니다. 삶의 사회적 상황이 생활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機能的·有機的으로 결합하여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나 내포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관습적인 태도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문화와 풍속은 기본적으로 공간·인간·시간의 3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공간-시간이 의미있

1) Howard, C. Michael, 『Contemporary Cultural Anthropology』, 1986. Boston, p.5.

2) 위의 책, p.5.

3) 장철수, 『한국 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 『역사민속학』 1집, 이론과 실천, 1991.

는 구성체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필자는 ‘三間構成體系’라고 부르고자 한다. 말하자면, 필자는 3종류의 ‘間(사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미체계가 바로 생활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이 3간구성체계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한다.⁴⁾

생활문화의 3간구성체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자연-생태적 조건, 인간의 사회-경제적 역할, 그리고 한 시기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제도의 지속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와 지역의 自然-生態的 조건, 인간의 社會-經濟的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제도의 결합은 바로 당대의 생활문화와 풍속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는 바로 생활문화와 풍속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3요소들의 변화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요소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3간구성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생활문화와 풍속의 전반적인 변혁과 개혁을 의미하며, 개개의 요소별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는 3간구성체계의 부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대에 있어서 특정한 下部文化의 형성과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 변화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인 변화나 개혁의 한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3간구성체계내의 부분적인 변화는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생활문화의 다양한 하부문화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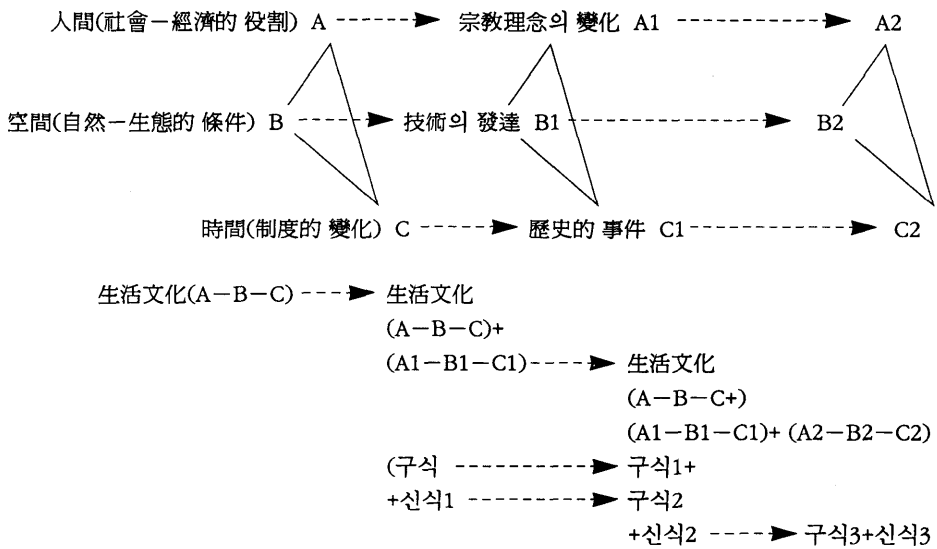
이 3간구성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技術의 發達, 새로운 宗教의 導入, 그리고 歷史의 事件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술의 발달은 자연-생태적인 환경이나 직업과 같은 생계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농어업기술의 변화를 유도하여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이념의 등장은 전혀 다른 世界觀과 生活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그리고 戰爭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바로 생활집단의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구성원과 그 성격을 단기간 내에 재편성함으로써 재래의 생활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3간구성체계는 재편성되며, 그에 따라 생활문화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서울의 생활문화와 풍속은 바로 이러한 변화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내용들의 집합체라고 하겠다. 따라서 生活文化史 또는 社會風俗史를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3간구성체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의하여 변화된 생활문화나 생활방식, 또는 풍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공존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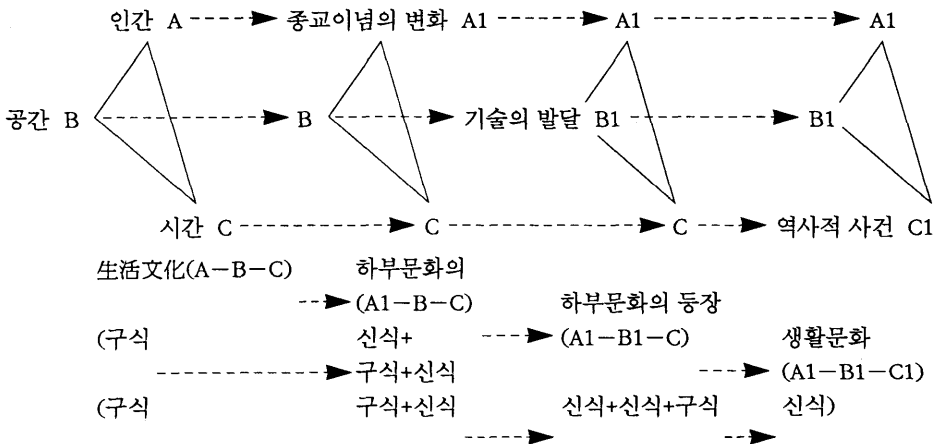
4) 위의 논문.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변하지 않은 '옛것' 과 변한 '새것' 을 구분하여 흔히 '新式' 과 '舊式'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또다른 하나의 하부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신식이라는 새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가 보편화되었을 때, 구식은 흔히 '傳統' 또는 '民俗' 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여, 당대의 문화현상을 '現代文化' 와 '傳統文化' 또는 '民俗文化' 라는 하부문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생활문화가 변해왔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생활문화사, 또는 사회풍속사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개념도로서 요약될 수 있다.

<도표 1> 生活文化의 전반적인 변혁을 보이는 三間構成體系의 개념도



<도표 2> 生活文化의 부분적 변화를 보이는 3간 구성체계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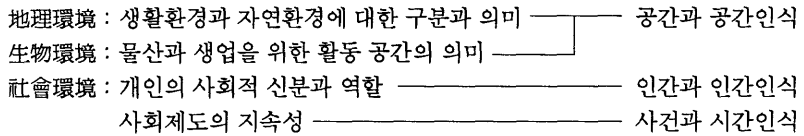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속에서, 특정한 인간집단의 生存方式과 說明方式, 그리고 傳承方式으로서의 생활문화의 성격은 먼저 環境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은 생활문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을 地理環境·生物環境·社會環境으로 구분한다면, 이 환경이란 바로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가리킨다. 그렇다면 지리환경이란 地勢를, 생물환경은 物產을, 사회환경은 인간의 社會的 役割과 社會制度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리환경과 생물환경은 바로 농업·상공업과 같은 인간집단의 생존방식을 결정해주는 요소이며, 사회환경은 이러한 생존방식을 정당화해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환경은 생존방식의 타당성과 함께 그에 따른 인간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방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환경은 지리환경과 생물환경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은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된 것이나 만들어진 것으로서, 바로 사회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리환경과 생물환경은 생활에 이용된 환경과 자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경과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당대의 技術水準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가운데에서 生活環境과 生活資源은 말하자면 文化環境으로, 住居空間과 勞動空間, 또는 生産空間의 開發, 物產과 生業方式 등, 생활문화의 직접적인 성격을 결정해 주며, 非生活環境과 非生活資源은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런 점에서 비생활환경과 비생활자원은 생활환경과 생활자원과 대조되어, 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없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인간은 비생활환경과 비생활자원을 통해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에 대한 활용과 효용에 대한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생활환경과 비생활자원은 바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에 대한 認知的 해석, 예를 들면 自然觀이나 風水地理와 같은 理論的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社會環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地理環境과 生物環境의 존재에 대한 설명방식과 함께 그것들을 활용하여 발달시킨 生存方式과 그 妥當性, 그리고 그 傳承을 위한 설명방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환경은 생존방식을 발달시킨 인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신분과 역할,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특히 당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집단의 宗教理念과 支配理念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념들은 바로 自然觀과 함께 人間觀·社會觀·生活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리환경과 생물환경을

결정하는 기술수준마저도 이 이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환경은 주체가 되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과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와 풍속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배이념의 변화와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생활문화와 풍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는가’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간과 인간과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총체를 통해서 생활문화와 풍속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환경이 생활문화와 풍속의 연구에서 갖는 의미와 맥락은 다음과 같다.

<도표 3> 환경이 갖는 생활문화적 의미와 맥락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지역의 생활문화나 풍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히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도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文獻資料를 우선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헌 기록물들은 모두 생활문화 또는 풍속을 수록하고 있는 民俗誌로서, 또는 民俗學的 研究를 위한 分析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로서 우리는 朝鮮時代에 전국적으로 작성된 地理誌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지리지는 지역별로 조선시대의 전 시기에 걸쳐 여러 번 편찬되어, 상당히 많은 분량의 ‘邑誌’로 정리된 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당시의 읍지가 단순히 지배계층의 ‘統治資料’라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 넘어, 民俗誌·生活文化誌·風俗誌로서, 민속학의 중요한 연구자료로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읍지는 비록 당대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한 지역, 또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을, 왜,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文化觀이나 文化意識의 한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다.

2. 民俗誌·風俗誌로서의 地理誌

1) 地理誌와 編制

현재까지 알려진 서울의 지리지를 편찬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432 『世宗實錄』 地理志(이하 「세실지」로 약칭함)
- 1476~1530 『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신동람」으로 약칭함)
- 1621 『薰陶坊鑄字洞志』(이하 「훈주지」로 약칭함)
- 1660~1674 『東國輿地誌』(이하 「동여지」로 약칭함)
- 1830 『漢京識略』(이하 「한경략」으로 약칭함)
- 1835~1848 『京兆部誌』(이하 「경조지」로 약칭함)
- 1849~1864 『輿圖備志』(이하 「여비지」로 약칭함)
- 1864 『大東地誌』(이하 「대동지」로 약칭함)
- 1864~1896 『東國輿地備攷』(「사찬읍지」본)(이하 「동비고」(사)로 약칭함)
- 1864~1884 『東國輿地備攷』(서울시사편찬위원회본)(이하 「동여고」(서)로 약칭함)
- 1864~1884 『東國輿地備攷』(민족문화추진위원회본)(이하 「동여고」(민)으로 약칭함)
- 1912 『全鮮誌』(「한국근대도지」본)

이들 지리지들은 우선 그 내용을 일정한 편목으로 묶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세실지」는 편목을 드러내지 않고 서술하고 있으며, 「훈주지」는 그 내용이 한성부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훈도방에 속하는 주지동에 국한한 것이며⁵⁾, 그리고 「경조지」⁶⁾는 漢城府 관아의 관장업무에 대한 자료로서 각각 다른 지리지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겠다. 또한 「전선지」⁷⁾는 일제시대의 초기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하겠다. 그밖의 나머지 지리지 자료들은 모두 일정한 편목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비지」, 「대동지」, 「동

5) 「훈주지」의 편목은 공관, 사우, 고적, 풍속, 효자, 절부, 명환의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6) 「경조지」의 편목은 기지, 공해, 좌아, 직장, 승발소장, 금제조, 난전각전, 장무서리소장, 고직소장, 오부방계, 사산금표, 진래각사, 이문각사 등 13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전선지」의 편목은 연혁, 산천, 형승, 풍속, 성곽, 종묘사직문묘급각사, 능원묘, 궁전, 방동, 호구, 선원기략, 교량, 학교, 창고, 시장, 은행, 우편, 경찰, 교회, 이전, 병원, 공원, 누각정대, 당사제현, 사관와, 관단, 원역, 원지, 사찰, 성씨, 물산, 봉수, 도로, 고적, 금석, 책판 등으로 되어 있다.

비고」의 편목을 비교하여 내용을 검토하겠다. 그 가운데에서 「동비고」의 경우 현재 까지 3개의 자료가 알려져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같은 이름과 함께 비슷한 편목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서술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종류의 이본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

먼저 이러한 地誌資料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체제는 경도와 한성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겠지만, 우선 각각의 편목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京都는 궁궐을 중심으로 한 왕궁의 생활과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공서를 포함하는 首都의 개념으로, 그리고 漢城府는 이러한 왕궁과 공서를 보호하는 行政單位로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성부의 기능을 설명한 「동여고」의 건치연혁조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성부는 경도의 口帳⁸⁾, 市廛, 家舍, 田土, 四山, 道路, 橋梁, 溝渠, 逋欠⁹⁾, 負債, 鬪毆, 晝巡, 檢屍, 車輛, 故失, 牛馬烙契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말하자면 한성부는 왕궁과 공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행정단위라고 하겠다. 이 점은 「신동람」, 「동여지」, 「동비고」의 편목을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편목을 통해서 보았을 때, 경도의 편목은 주로 지배계층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자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반면 한성부의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생활문화사 또는 풍속사를 위한 자료로서는 한성부의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경도와 한성부의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口帳: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해 놓은 장부

9) 逋欠: 흠포라고도 하며, 관물을 사사로 소비하는 것

<도표 4> 지리지별 京都 編目的 비교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비지」	「여비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國都					국도	국도	국도
					國號	국호	국호
					極度	극도	극도
					分野	분야	분야
					疆域	강역	강역
			地圖				
				國朝紀年			
城郭	성곽	성곽	도성	도성	성곽	성곽	
宮闕	궁궐	궁궐	궁궐	궁궐	궁궐	궁궐	궁전
壇廟	단묘	단우	단유	단유	단묘	단묘	단묘
		廟殿宮	묘전	묘전			
			眞殿	진전			
			宮廟	궁묘			
			宮室				
苑囿	원유	원유			원유	원유	원유
文職公署	문직공서		동반부서	동반부서	문직공서	문직공서	문직공서
武職公署	무직공서		서반부서	서반부서	무직공서	무직공서	무직공서
		闕內各寺					
		闕外各寺					
					雜職公署	잡직공서	잡직공서
					革廢公署	혁폐공서	혁폐공서
						權設職	권설직

<도표 5> 地理別 漢城府 篇目の比較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도지」	「대동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建治沿革	건치연혁	연혁		연혁	건치연혁	건치연혁	건치연혁
					官員	관원	관원
					吏屬	이속	이속
					屬司	속사	속사
					官府	관부	관부
		天文					
				古邑			
				戶口	호구	호구	호구
	旱田						
	水田						
郡名	군명				군명	군명	군명
姓氏					성씨	성씨	성씨
形勝	형승	형승		형승			
					徭役	요역좌경	요역좌경
		明勝					명승
					禁令	금제(부금화)	금제
					形勢	형세	형세
					科制	과제	과제
					儀仗	의장	의장
					道路	도로	도로
					田野	전야	전야
					牧場	목장	목장
					關防	관방	관방
					伏處	복처	복처
					斥埃		
						官制	관제
風俗	풍속				풍속	풍속	풍속
						東西班官階	동서반관계
						雜職階	잡직계
						士官階	서관계(부녹계)
						營繕	영선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도지」	「대동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行巡	행순
						基地	기지
						工匠	공장
							井池
山川	산천	산천		산수	산천	산천(부정지)	산천
				城池			
				疆域	강역	강역	강역
				營衙			
				壇壝			
				廟殿			
				寢廟			
烽燧	봉수			봉수	봉수	봉수(부척후)	봉수
	土產			토산			
宮室	궁실	궁실		궁실	궁실	궁실	궁실
樓亭				누정	누정	누정	누정
驛院	우역	역원		역참	역원	역원	역원
				津度			
橋樑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市街					시가	시가	시가
		市塵		시전	시전	시전(부감고)	시전
					鋪肆	포사(부향도)	포시
					匠房	장방	장방
					場市	장시	장시
					貢獻	공헌(부선상)	공헌
					第宅	제택	저택
佛宇	사찰				불우	불우	불우
詞廟	사묘	사묘		사우	사묘	사묘	사묘
古跡	고적	고적			고적	고적	고적
	陵墓				원묘	원묘	원묘
名宦	명환				명환	명환	명환
人物:효자, 충의,열녀	인물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도지」	「대동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流寓						
	烈女						
題詠					제영	제영	제영
		各洞		방리	부방	부방	부방
				典故			

2) 地理誌의 內容에 對한 分析

경도와 한성부의 지리지에 실려 있는 편목을 합쳐, 위에서 제시한 3간구성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8> 지리지별, 3간구성 체계별 편목의 비교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도지」	「대동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空間	성곽,궁궐, 단묘,원유, 형승,산천, 봉수,궁실, 누정,역원, 교량,불우, 사묘,제영, 시가	성곽,궁궐, 단묘,원유, 한전,수전, 형승,산천, 봉수,토산, 궁실,우역, 관량,사찰, 사묘,능묘,	성곽,궁궐, 단우,묘전, 궁,원유,천, 문,형승,명, 승,산천,궁, 실,역원,교, 량,시전,사, 묘,각동	지도,도성, 궁궐,단유, 묘전,진전, 궁묘,궁실,	도성,궁궐, 단유,묘전, 진전,궁묘, 형승,산수, 성지,단유, 묘전,침묘, 봉수,토산, 궁실,누정, 역참,진도, 교량,시전, 사우,방리, 영위,	극도,분야, 강역,성곽, 궁궐,단묘, 원유,속사, 관부,형세, 도로,전야, 목장,관방, 복처,척후, 산천,강역, 봉수,궁실, 누정,역원, 교량,시가, 시전,포사, 장방,장시, 제택,불우, 사묘,원묘, 제영,부방,	극도,분야, 강역,성곽, 궁궐,단묘, 원유,속사, 관부,형세, 도로,전야, 목장,관방, 복처,공장, 산천,강역, 봉수,궁실, 누정,역원, 교량,시가, 시전(부감 고),포사, (부향도), 장방,장시, 제택,불우, 사묘,원묘, 제영,부방,	극도,분야, 강역,궁전, 단묘,원유, 관부,명승, 형세,도로, 전야,목장, 관방,복처, 공장,정지, 산천,강역, 봉수,궁실, 누정,역원, 교량,시가, 시전,포시, 장방,장시, 저택,불우, 사묘,원묘, 제영,부방,

	「신동람」	「동여지」	「한경략」	「여도지」	「대동지」	「동여고」 (사)	「동여고」 (서)	「동여고」 (민)
人 間	문직공서, 무직공서, 성씨,풍속, 명환,인물	문직공서, 무직공서, 풍속,명환, 인물,유우, 열녀	궐내각사, 궐외각사,	동반부서, 서반부서	동반부서, 서반부서, 호구,	문직공서, 무직공서, 잡직공서, 관원,이속, 호구,성씨, 요역좌경, 금제,과제, 의장,풍속, 공헌,명환,	문직공서, 무직공서, 잡직공서, 권설지,관 원,이속,호 구,성씨,요 역좌경,금 제(부금 화),과제, 의장,관제, 풍속,동서 반관계,잡 직계,사관 계(부늬 과),영선, 행순,공헌, 명환,	문직공서, 무직공서, 잡직공서, 권설지,관 원,이속,호 구,성씨,요 역좌경,금 제,과제,의 장,관제,풍 속,동서반 관계,잡직 계,사관계, 영선,행순, 공헌,명환,
時 間	국도,군명, 고적,	건치연혁, 군명,고적,	연혁,고적,		국조기년, 고읍,전고	국도,국호, 혁폐공서 건치연혁, 군명,고적,	국도,국호, 건치연혁, 혁폐공서, 군명,고적, 기지,	국도,국호, 혁폐공서, 건치연혁, 군명,기지, 고적,

(1) 空間에 관한 內容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간에 대한 자료는 그 항목의 내용으로 보아, 地勢에 관한 것 · 制度的 시설에 관한 것 · 信仰 및 儀禮를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 生業活動에 관한 것 그리고 餘暇 및 文學活動을 위한 공간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다.

가. 自然的 地勢에 관한 내용: 山川, 天文, 地圖, 山水, 極度, 分野, 疆域, 形勢

- 나. 制度的 施設을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城郭, 都城, 宮闕¹⁰⁾, 宮殿, 苑囿, 烽燧, 宮室, 樓停, 驛院(우역, 역참), 橋梁(관량), 城池, 屬司, 官府, 津渡, 道路, 田野, 牧場, 關防, 伏處, 斥埃, 部坊(방리, 각동), 第宅(저택), 井池, 營衛
- 다. 信仰 및 儀禮를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壇廟, 壇遺, 壇宇, 佛宇, 寺刹, 詞廟, 祠宇, 廟殿, 陵墓, 廟殿宮, 眞殿, 宮廟, 寢廟, 園廟
- 라. 生業活動을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市街, 市廛, 旱田, 水田, 土產, 鋪肆, 匠房, 場市, 工匠, 鋪市
- 마. 餘暇 및 文學活動을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形勝, 題詠, 名勝

이 가운데에서 특히 생활문화와 풍속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自然的 地勢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서 山川, 制度的 施設을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서 부방과 제택, 그리고 信仰과 儀禮, 生業活動을 위한 공간에 관한 내용이다.

(2) 人間에 관한 內容

인간에 관한 자료는 그 항목의 내용에 따라 文武 등 官職에 관한 내용·姓氏의 종류·本府 출신인물 남녀의 行적·名宦 및 他地 출신 인물의 行적·풍속에 관한 내용·호구에 대한 내용·관직의 역할에 관한 내용·禁制 및 儀仗에 관한 내용·신분 및 획득에 관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官職과 職務에 관한 내용: 文職公署, 武職公署, 闕內各司, 闕外各司, 東班部署, 西班部署, 雜織公署, 官員, 吏屬, 權設職, 東西班官階, 雜織階, 士官階, 徭役坐更, 營繕, 行巡, 貢獻
- 나. 姓氏와 戶口에 관한 내용: 姓氏, 戶口
- 다. 本府 출신 인물 남녀의 行적: 人物, 烈女
- 라. 名宦 및 타지 출신 인물의 行적: 名宦, 流寓
- 마. 臣分에 따른 風俗에 관한 내용: 風俗, 禁制, 儀仗

이 가운데에서 성씨와 호구 그리고 신분에 따른 금제, 의장, 풍속 등은 생활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10) 궁궐은 그 건물의 종류에 의하여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왕가의 일상생활 공간 이외에 문무백관으로부터 조하를 받는 의례공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공간, 천문관측을 위한 공간, 동궁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간, 조상숭배의례를 위한 공간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3) 時間에 관한 內容

시간에 관계되는 자료는 그 항목의 내용에 따라 王家의 系譜에 관한 내용, 沿革 및 郡名 變遷에 관한 내용, 폐지된 公署에 관한 내용, 古蹟 및 遺蹟에 관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王家의 系譜에 관한 내용: 國朝紀年

나. 沿革 및 郡名의 變遷에 관한 내용: 建置沿革, 郡名, 沿革, 古邑, 典故, 國都, 國號
다. 廢止된 公署에 관한 내용: 革廢公署

라. 古蹟 및 遺蹟에 관한 내용: 古蹟, 基地

이 가운데에서 혁폐공서와 고적, 그리고 기지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생활문화와 풍속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3. 空間과 그 認識

1) 地脈과 水脈의 認識

지리지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서울의 地脈에 대한 인식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都城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도성을 벗어나 비교적 큰 범위, 즉 京畿地域의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이 북쪽의 鎭山을 기준으로 동서남쪽의 地脈을 해석하고 있는 四山說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진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앞의 설과는 달리, 宮城의 主山이 되는 백악을 중앙으로 하고 동서남북의 지맥을 해석하고 있는 五山說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종류의 지맥인식은 모두 陰陽五行說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四山說은 또한 鎭山說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산이 있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그 좌우의 지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三角山이 鎭山이 되고, 駱山이 그 왼쪽에 높이 서 있고, 모악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으며, 木覓山이 앞에 공손히 서 있으며, 漢江이 그 남쪽을 지나간다”¹¹⁾ 고 하여 地脈과 水脈

11) 「신동람」 산천

을 아울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형세는 전해 오는 말로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므로 長子가 가볍게 되고 枝子가 중하게 된다”¹²⁾는 풍수설을 낳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京都를 건설할 때에 무학과 정도전 사이에 진산에 대한 논의가 각각 달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한다. 즉 무학은 仁旺山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우의 용호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정도전이 옛날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앞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니, 同向으로 도읍지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¹³⁾ 따라서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고 궁궐을 남향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삼각산까지의 지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三角山¹⁴⁾은 평강현의 분수령에서 잇달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이 높고 낮음이 있다. 빙빙 둘러서 양주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삼각산이 되니, 경성의 진산이다.

이 삼각산은 白雲·萬頃(일명 國望이라고 한다)·仁壽의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으로서, 만경봉이 동쪽으로 굽어 돌아서 釋迦·普賢·文殊 등의 여러 봉우리가 되었는데, 普賢峰의 곁가지 산발이 곧 도성의 주맥이기 때문에 摠戎廳에서부터 補土所를 설치하고 주관하여 보축하였다.¹⁵⁾

그리고 백악을 주맥으로 하여 남쪽에 景福宮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지리인식은 진산과 한강이 백악-낙산-모악-남산을 잇는 도성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五山說은 五德丘說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진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진산설과는 달리 궁성의 주산인 백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맥을 인식한다. 말하자면 궁성을 중심으로 주위의 지맥이 오덕을 갖추었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 설은 권근이 ‘神誌秘說’을 인용하여, 가운데 있는 面岳이 圓形이니 土德이요, 북쪽에 紺岳이 있어 曲形이니 水德이요, 남쪽에 冠岳이 있어 尖形이니 火德이요, 동쪽에 楊洲南行山이 있어 直形이니 木德이요, 서쪽에 樹洲北岳이 있어 方形이니 金德이니, 오덕을 갖춘 명당이라는 것이 그것이다.¹⁶⁾

이 설은 앞의 진산설과는 달리 진산과 함께 한강이라는 수맥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는 반면에 궁성이 있는 백악을 중심으로 지맥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 근거를 ‘神誌秘說’에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설은 진산설보다는 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도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궁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12) 「동비고」(서) 국도

13) 「동비고」(서) 국도

14) 『世祖實錄』卷3, 2년 3월 丙申條에 있는 梁誠之의 상소문에 의하면, 삼각산을 5악의 하나로, 백악을 5진의 하나로, 한강을 남독으로, 목역산을 명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온다.

15) 「동비고」(서), 권 2, 산천

16) 「동비고」(서), 권 2, 국도.

인식은 백악을 중심으로 한 궁성을 경기지역, 즉 적성 감악산-과천 관악산-양주 남행산-수주(부평) 북산이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서울의 수맥은 한강 이외에는 도성의 안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앙에 개천을 만들고 도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수맥의 물들을 모아, 東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강과 수맥은 모두 西流하여 바다로 들어 가는데, 오로지 경성의 개천만은 東流하기에 수세가 올바르다고 말한다.¹⁸⁾ 도성 안의 수맥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다음에서 보듯이 水原에 의한 것과 다리를 중심으로 한 것의 2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7> 地理誌別 서울 水脈의 比較

「한경략」	「동여고」
仁王山下 白雲洞川水	仁王山 白雲洞水
白岳下 三清洞川水	三清洞水
承傳色橋水	北御水橋
북산하 북영천	二橋水 隴峰水
북산하 원동·계생동 제천수	二橋水 灰洞·濟生洞水
昌慶宮 後苑 옥류천수	二橋水 昌慶宮 後苑水
성균관 홍덕동 제천수	初橋水 東泮水 西泮水
남산하 창동천수	曲橋水 木覓山 北倉洞水
	曲橋水 貞陵洞水
	曲橋水 會賢洞水
	南山下 南山洞川水
	曲橋水 明禮洞水
	通雲橋水
남산하 주자동천수	草塵洞水
남산하 필동천수	部洞水
남산하 생민동천수	
남산하 묵사동천수	靑寧橋水
남산하 쌍리동천수	於靑橋水
남산하 남소동천수	二間水門水
모악천수	

18) 「한경략」 교량

2) 水脈과 部坊制度

위에서 살펴 본 수맥은 단지 지리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을 위한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수맥은 한성부에서 오부를 두어 관내를 검찰하기 위한 행정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오부는 방리 거주인들의 非法事·橋梁·道路·頒火·禁火·里門警守·家址·打量·人屍檢驗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데,¹⁹⁾ 그 구분을 주로 수맥에 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의 개천을 중심으로 경도는 남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중부와 동부를, 그 남쪽은 남부로 삼고 있다. 또한 북쪽의 仁王山下 白雲洞水와 남쪽의 남산하 창동천수(曲橋水 木覓山 北倉洞水)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에는 서부와 북부를, 남쪽에는 서부와 남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북쪽의 북산하 북영천(二橋水 鷹峰水)를 중심으로 그 서쪽에는 북부, 동쪽에는 동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북부와 중부는 景福宮의 光化門과 昌德宮의 敦化門을 기준으로 북쪽은 북부로, 남쪽은 중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궁궐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경복궁과 창덕궁의 사이는 북부, 그 앞은 중부, 경복궁의 서쪽은 서부, 창덕궁의 동쪽은 동부로 구분하며, 개천의 남쪽은 남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5부의 구분 이외에 수맥은 구체적으로 坊의 경계로서도 이용된다. 방은 태조 때에는 52방, 세종 때에는 49방, 영조 때에는 43방, 고종 때에는 47방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방 밑에는 契를 두고, 계 아래에는 洞을, 동아래에는 統을 두었으며, 5戶를 1통으로 편성하였다. 방아래의 계는 영조 때에는 328계, 고종 때에는 339계로 각각 개편되기도 했다.²⁰⁾ 5부별로 방수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8> 部坊制의 變遷

年代 五部	太祖	世宗	成宗	英祖	高宗
東部	12	12	12	6	7
南部	11	11	11	11	11
西部	11	8	8	9	9
北部	10	10	10	9	12
中部	8	8	8	8	8

19) 「동여고」 2권 속사오부

20) 元永煥, 「행정제도」, 『서울육백년사』 1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pp.355-360.

이러한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남부와 북부 그리고 중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동부는 조선시대의 후기에 들어서, 서부는 초기부터 변화를 보인다. 이것은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와 방을 결정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부는 초기부터, 그리고 동부는 후기에 들어서 호수와 인구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에 「동여고」와 「한경략」의 방명과 그 위치를 수맥과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東部 - 崇教坊 : 성균관 홍덕동 제천수(초교수 동반수, 서반수)의 북쪽
 蓮花坊 : 성균관 홍덕동 제천수 서쪽
 健德坊 : 성균관 홍덕동 제천수 동쪽
 彰善坊 : 개천 북쪽과 종로 남쪽의 사이
 崇信坊 : 성밖 홍인문 북쪽
 仁昌坊 : 성밖 개천 북쪽과 홍인문 앞쪽
- 南部 - 樂善坊 : 남산하 필동천수·생민동천수(부동수)와 남산하 목사동천수(청녕교수)의 사이
 誠明坊 : 남산하 주자동천수(초전동수)와 남산하 필동천수·생민동천수(부동수)의 사이
 薰陶坊 : 남산하 남산동천수(곡교수 명례동수)와 남산하 주자동천수(초전동수)의 사이
 太平坊 : 개천 남쪽과 훈도방 사이
 廣通坊 : 곡교수 정릉동수와 개천 사이
 明禮坊 : 곡교수 회현동수와 남산하 남산동천수(곡교수 명례동수)의 사이
 好賢坊 : 남산하 창동수(곡교수 목덕산 북창동수)와 곡교수 회현동수 사이
 明哲坊 : 남산하 목사동천수(청녕교수)의 동쪽에서 성 밑까지로서, 남산하 쌍리동천수(어청교수)와 남산하 남소동천수(이간수문수)를 포함함.
 屯之坊 : 남산 성밖 남쪽에서 만초천의 사이
 豆毛坊 : 성밖 개천 남쪽에서 전관교의 사이
 漢江坊 : 남산 성밖에서 한강진까지
- 西部 - 餘慶坊 : 곡교수 정릉동수의 북쪽과 개천의 남쪽 사이
 積善坊 : 인왕산하 백운동천수와 육조거리 사이
 仁達坊 : 인왕산하 백운동수의 서쪽과 경회궁 사이

1) Howard, C. Michael, 『Contemporary Cultural Anthropology』, 1986. Boston, p.5.
 2) 위의 책, p.5.

養生坊 : 남산하 창동천수(곡교수 목덕산 북창동수)의 서쪽

皇華坊 : 곡교수 정릉동수의 서쪽에서 서소문의 사이

盤松坊 : 서대문밖

盤石坊 : 남대문 밖

龍山坊 : 만초천과 창천 사이

西江坊 : 창천과 사천의 사이

北部 - 順化坊 : 북어교수의 북쪽

義通坊 : 북어교수와 인왕산하 백운동천수의 사이

俊秀坊 : 인왕산하 백운동천수와 옥류동천수의 사이

觀光坊 : 백악하 삼청동천수의 동쪽

鎮長坊 : 통운교수 수원 서쪽

廣化坊 : 북산하 원동·계생동수(이교수 회동·제생동수)의 사이

陽德坊 : 북산하 원동·계생동수(이교수 회동·제생동수)의 서쪽

嘉會坊 : 이교수 회동·제생동수의 북쪽

安國坊 : 통운교수 수원 남쪽

中部 - 澄溝坊 : 경복궁 앞, 북어교수 동쪽과 종로 북쪽

壽進坊 : 종로 북쪽

堅平坊 : 종로 북쪽과 통운교수 서쪽

長通坊 : 개천 북쪽과 종로 사이

瑞麟坊 :

寬仁坊 : 통운교수와 경행교수 사이

慶幸坊 : 경행교수 동쪽과 종로 북쪽

貞善坊 :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종로 북쪽까지

이것으로 보아 도성 내외의 방리제는 수맥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 이러한 5部坊里制는 이미 고려시대 초부터 개성을 5부 35방제로 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鄭道傳이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수도의 행정제도는 고려 개성의 것을 본받되, 그 이름은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성부의 방리제는 자연지리적으로 수맥을 이용하여 구역을 정하고, 그곳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그런 점에서 한성부의 부방제의 이름은 조선왕조가 경도지역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生活文化的 관점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이름은 정도전이 이상으로 삼은 유교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방의 이름을 개성의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지만, 한성부는 바로 유교의 이념이 반영된 지역, 즉 ‘儒國土思想’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王宮과 公署의 位置

경도는 국가의 통치를 위한 지배집단이 말한대로, 왕궁과 공서가 위치한 곳이다. 경도에서 이러한 왕궁과 공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대체로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²¹⁾ 이러한 점으로 보아 漢城府는 우선 행정을 위한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왕궁은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개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왕궁을 북부에 두고 있는 것은 앞서에서도 보았듯이, 帝王은 모두 남쪽을 앞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동양의 전통적인 통치사상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地脈과 王宮의 위치와 明堂穴의 길흉이 왕조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본 風水地理說에 의한 것이었다.²²⁾ 그리고 이곳의 지리가 또한 풍수지리설에서 취수명당으로 알려진 곳의 조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내수로서 개천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남산의 여러 물들이 모두 왕궁앞에서 모여 개천을 이루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 개성의 鎭山인 松嶽과 대비되는 곳으로서 白岳이 왕궁의 주산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다음의 도표에서도 확인되듯이, 백악을 주산으로 한 正宮인 景福宮과 鷹峰을 주산으로 한 異宮인 昌德宮을 중심으로 한 북부와 서부, 그리고 중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남부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왕궁과 공서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9> 王宮의 位置

北部	南部	中部	西部	東部
景福宮		壽康宮	德壽宮	梨現宮
昌德宮		雲現宮	慶熙宮	龍興宮
昌慶宮		於義宮	新宮	
壽進宮		嘉順宮	慶運宮	
彰義宮			仁慶宮	
			明禮宮	
			龍銅宮	

21)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연구』(대학도서, 1982.) p.87

22) 경복궁이 명당인가에 대한 의문은 세종때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아마도 그 동안 경복궁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녕, 「세종과 풍수지리설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출판부, 1987 참조.

<도표 10> 文職公署의 配置

北部	南部	中部	西部	東部	宮內
宗親府	長興庫	儀賓府	內需司	司贖寺	尙書院
議政府	校書館	敦寧府	內資寺	成均館	司饗院
忠勳府	水 庫	義禁府	軍資監	活人署	司導寺
忠翼府	典牲暑	吏 曹	廣興倉	訓練院	弘文館
內侍府	惠民署	宗簿寺	司 署		藝文館
內贖寺	歸厚署	戶 曹	義盈庫		春秋館
司宰監	南 學	濟用監	禮 曹		承文院
豐儲倉	瓦 署	典艦司	通禮院		校書館
司圃署		平市署	奉常寺		內醫院
養賢庫		禮賓寺	掌樂院		觀象監
觀象監		典醫監	司譯院		世子侍講院
宗 學		宗廟署	社稷署		五衛都摠府
昭格署		圖書署	司畜署		典設司
中 學		耆老所	活人署		尙衣院
繕工監		司僕寺	西 學		典冑司
掌苑署		典獄署	兵 曹		
造紙署		修城禁火司	軍器寺		
司諫院			刑 曹		
			工 曹		
			司憲府		

<도표 11> 武職公署의 位置

北部	南部	中部	西部	東部	宮內
忠武衛	忠佐衛	中樞府	虎奮衛	龍 衛	五衛都摠府
守禦廳	訓練院	義興府	訓練都監	御營廳	宣傳官廳
摠戎廳	糧餉廳	能磨兒廳	慕華館	北平館	世子翊衛司
平 倉	焰硝廳	儀仗庫			
龍虎營	大平館	禁衛營			
	東平館	經理廳			
		捕盜廳			
		巡 廳			
		漢城官府			

이러한 배치로 보아 文職公署는 왕궁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북부·중부·서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동부에는 드물다. 그리고 武職公署의 경우는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교통수준이나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북부와 중부, 서부에는 주로 왕궁과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부와 남부는 주로 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4) 住宅 및 同宗村落

(1) 住宅規定

한성부의 주택은 조선 초기부터 대지와 주택의 크기를 品階別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의 개발을 위한 전략의 하나였음을 잘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계획에 의해 도성을 개발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나 기준은 우선 왕궁과 공서, 그리고 市廛의 건립이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거지로 예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시의 교통사정이나 도로사정에 의해서 文武職·官人·商人·工匠人 등이 따로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거지는 따로 구분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가 강한 신분 및 관료제 사회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생활양식은 신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에서 살펴 볼 儀仗과 禁制에서 잘 엿볼 수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도표 12> 品階別 臺地 分給基準²⁴⁾

	1395년 (太祖 4)		1460년 (世祖 6)	
	負 數	현행면적(m ²)	負 數	현행면적(m ²)
大君·公主			30	4,224.90
王子君·翁主			25	3,520.75
一品	35	4,929.05	15	2,112.45
二品	30	4,224.90	15	"
三品	25	3,520.75	10	1,408.30
四品	20	2,816.60	10	"
五品	15	2,112.45	8	1,126.64
六品	10	1,408.30	8	"
七品	8	1,126.60	4	563.32
八品	6	844.98	4	"
九品	4	563.32	4	"
庶人	2	281.66	2	281.66

<도표 13> 品階別 家舍 크기의 基準²⁵⁾ (단위:영조척)

	間數	累間數	정침·익랑			기타 건물			
			복장	행장	주고	복장	행장	주고	누고
大君	50	10	10	11	13	9	10	12	18
親兄弟·公主	42	8	10	11	13	9	10	12	18
二品以上	34	6	9	10	12	8	9	7.5	13
三品以下	25	5	9	10	12	8	9	7.5	13
庶人	7	3	7	8	7				12

(2) 거주지 및 주택

지리지에 나타나 있는 주거지 및 주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24) 김의원, 앞 책, p.88

25)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p.59

26) 「동비고」(서) 제택

<도표 14> 五部別 居住地

北 部	南 部	中 部
<p>大寺洞：申晚, 李珥, 李浣 三清洞：李基高, 李尙謙, 閔 重, 成三問 昭格署洞：柳灌 仁王洞：蘇世讓 八判洞：八判書 居地 濟生洞：李浚慶, 朴明源, 朴趾源 孟監洞：孟思誠 白岳山下：金壽恒 安國坊：閔維重, 延 君 大隱岩洞：金柱臣 順化坊壯義洞：金尙容, 南 袞, 宋翼弼, 鄭澈, 成守深, 吳道一 白雲洞：李念義, 沈斗室 院 洞：劉希慶, 洪繼寬 義通坊：許琮</p>	<p>會賢洞：鄭光弼 會賢洞：鄭陽坡 會賢洞：鄭汝昌 會賢洞：姜世晃 會賢洞：金錫胄 會賢坊：沈綱 大정동：하기 訓導坊 履塵洞：洪顯周 長興洞：朴言, 沈喜壽, 金光國 尙 洞：尙震 校書洞：林慶業, 采 柱, 柳得恭 明禮坊 타락동：趙末生, 尹耆東 南山洞：李敬輿 세거지 훈도방 區衛廳洞：尹善道 羅洞：羅 佐 倉洞：許穆 鑄字洞：權擘 樂善坊 墨寺洞： 李安訥, 趙顯命, 許生 明禮坊：貞淑翁主, 孫順孝 筆 洞：尹美村 小南洞：李浚慶 銅 峴：許積 樂善坊 南學洞：朴承宗 靑學洞：朴揖翠軒 樂善坊 生民洞：朴彭年 雙里洞：李爾瞻, 尹希宏 明禮坊 蘭亭里：韓明會 명철방 청녕교：조연</p>	<p>鄉校洞：趙光祖 壽進洞：鄭道傳 里門洞：具壽永</p>

西 部	東 部	城 外
皇華坊 御書閣洞：崔奎瑞 皇華坊 西小門洞：李滉 昭義門內：慎守勤 滌局洞：金長生 太平洞：李山海, 朴淳 報恩殿洞：洪純彥 皇華坊：申槩	於義洞：申光漢, 南怡 栢洞：朴崑 宋洞：宋時烈 蓮花坊館洞：李廷龜 蓮花坊 東村：李石亨 健德坊：麟平大君	興仁門外：柳寬 安岩洞：永順君 溥 崇禮門外：洪允成, 姜希孟, 조종경 誦經峴：李德營 林 塘：鄭惟吉 追慕洞：閔維重 (仁顯王后 閔氏) 車洞：洪履詳 盤松坊 동자洞：尹斗壽 미정洞：정연 藥田峴：徐諧, 成倪 鶯峴：李緯, 李晚成 萬里峴：崔萬里, 李정보 雇馬廳洞：金宗瑞, 저저洞：沈貞 西門外：沈德符

위의 자료에 의하면, 팔판동의 8판서의 거주지, 會賢洞의 정광필 후손의 세거지와 남문밖의 정씨의 세거지, 남산동의 이경여 세거지, 명례방 타락동의 조말생 후손의 세거지, 명례방 난정리의 한명희 후손들의 세거지(同種諸韓氏 多居)와 누국동의 김장생의 자손 세거지, 송동의 이정귀 세거지, 차동의 홍이상 세거지, 명철방 청녕교의 조연 후손의 세거지 등은 모두 유명한 학자들과 벼슬아치들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동종마을²⁷⁾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한성부에서도 동족마을이 있었던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5) 信仰空間과 그 認識

(1) 制度信仰과 壇廟社의 位置

27) 同宗마을이라는 말은 흔히 同族마을, 同姓마을, 또는 同族村落이라고 불러 왔으나, 전통적으로 동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 15> 信仰 및 儀禮空間의 配置

北部	南部	中部	西部	東部	宮內
厲壇 孝思廟 永敬殿 신비寺 毓祥宮 藏譜閣 延祐宮 懿昭廟 文禧廟 文祐廟 연고宮 宣禧宮 全溪大院君廟 白嶽神祠	風雲·雷 雨·山川城 隍堂 嶽海濱壇 靈星壇 老人星壇 司寒壇 名山大川壇 永禧殿 南廟 漢江壇 儲慶宮 孝敬殿 崇恩殿 光海君墓 木覓神祠 榮祭	羸神廟 旗祭所 燕山君墓	社稷壇 愍忠壇 宣武祠 圓壇	先農壇 先蠶壇 雩祀壇 馬祖壇 先牧壇 馬社壇 馬步壇 禡祭壇 宗廟 永寧殿 文廟 啓聖祠 崇節祠 靈星壇 東廟	文昭殿 延恩殿 大報壇 仁安殿 仁德殿 廣孝殿 輝德殿 景禧殿 永昌殿 景安宮 昭敬殿 孝敬殿 文德殿 永慕殿 孝敬殿 敬慕殿 永慕殿 孝敬殿 孝思殿 崇恩殿 永思殿 肅寧殿 孝思殿 敬慕殿 敬思殿 孝敬殿 永慕殿 孝寧殿 永昭殿 敬寧殿 孝昭殿 敬昭殿 永徽殿 敬徽殿 孝明殿 孝僖殿 徽定殿 孝文殿 顯思宮

이러한 위치로 보아 경도의 신앙공간은 궁안밖의 조상숭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 묘전과 함께 왕권과 지배이념의 상징인 사직단과 종묘 그리고 문묘를 제외하면 주로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동부에는 주로 生業을 담당하고 있는 신앙과 함께 軍事的 목적을 위한 신앙공간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부는 주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城隍神 계통의 신앙공간이 자리잡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동대문의 이름을 다른 대문의 이름과는 달리 '興仁之門' 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풍수지리적 해석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보다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佛敎信仰

<도표 16> 地理誌別 記錄 寺刹의 比較

「신동람」	「동여지」		「동여고」	
	寺刹	古蹟	佛宇	廢寺
興天寺		興天寺		司僕寺
興德寺		興德寺		興德寺
內佛堂				內佛堂
圓覺寺		圓覺寺		掌樂院
仁王寺				仁王寺
金剛窟				金剛窟
福世菴				福世菴
藏義寺	藏義寺			湯春臺
演窟				演窟
香林寺	香林寺			香林寺
積石寺	積石寺			積石寺
淸涼寺	淸涼寺			淸涼山
重興寺	重興寺			重興寺
僧伽寺			僧伽寺	
三川寺	三川寺			三川寺
文殊寺	文殊寺		文殊寺	
津寬寺	津寬寺		津寬寺	
道成菴	道成菴		道成菴	
		神穴寺		
			金輪寺	

「신동람」	「동여지」		「동여고」	
	寺刹	古蹟	佛宇	廢寺
			慈壽院	
				仁壽院
			淨業院	
			太古寺	
			重興寺	
			輔國寺	
			鎭國寺	
			扶旺寺	
			國寧寺	
			普光寺	
			圓覺寺	
			龍岩寺	
			祥雲寺	
			西岩寺	
			奉聖菴	
			元曉菴	
			文殊菴	

위의 도표에 의하면 조선왕조 초기에는 비교적 불교 사찰이 도성 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중기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지배이념으로 朱子學을 채택하고 불교를 배척한 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慈壽院이나 淨業院과 같은 것이 도성내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종교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부의 삼각산에 있었던 사찰은 계속해서 후기까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찰이 북한산에 건립되고 또 여기에 僧軍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²⁸⁾, 불교를 군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여고」(민)에 기록되어 있는 한성부의 신앙에 대한 금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성 안에 무적이 거주하거나 여염집에 승니가 유숙하는 자는 논죄한다.

나) 잡귀신에게 제사지내거나 경성 내외에서 크고 작은 음사를 금한다.

28) 「동여고」(서) 권 2. 불우.

- 다) 승니로서 함부로 도성 안에 들어 오는 자나 처녀로서 여중이 되는 자는 치죄 하며, 환속하게 하되 모두 엄금하여 방치한다.
- 라) 유생과 부녀자로서 절간에 올라가는 자나 여중이 되는 자는 장형 100대에 도형 3년이다.
- 마) 도성 안에서 야제를 거행하는 자 장형 50대에 처한다.
- 라) 사족집 부녀자로서 산간 소변에 유연하거나 친히 야제나 산천 성황사묘에 제사를 거행하는자 장형 50대에 처한다.
- 마) 화랑 유녀 및 무녀로서 경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모두 적발하여 논죄한다.

6) 生業活動을 위한 空間

먼저 문헌에 나타나 있는 한성부의 물산과 토산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7> 地理誌別 物産 및 土產品의 比較

「동여지」(17세기 중반)	「임원경제지」(19세기전반)	「대동지」(19세기 중반)
陶器		
唐桃		
	鬱陵桃	
紫桃	紫桃	
栗		
		林禽奈: 능금
		桃
		李
玄參: 피참깨, 약재		
		芋: 토란
蘿: 무	菜: 무	
	: 배추	
硝		
飴糖: 엿	飴糖	
	鯉魚: 잉어	鯉魚
秀魚: 송어	秀魚	秀魚
錦鱗魚: 쏘가리	錦鱗魚	魚: 쏘가리
葦魚: 웅어		

「동여지」(17세기 중반)	「임원경제지」(19세기 전반)	「대동지」(19세기 중반)
訥魚: 누치	訥魚	
魚: 붕어	魚: 붕어	
白魚: 뱀어	白魚	白魚
豚魚: 복	河: 복	
密魚		
		鮎魚: 메기

이 도표에 의하면, 한성부의 물산과 토산물은 대체로 王宮과 公署에서 사용하기 위한 陶器와 그 밖의 염초, 이당 이외에는 모두 자연산물이다. 그 종류는 크게 陸産物과 水産物로 나누어진다. 육산물로는 과일종류와 채소가 대부분이며, 수산물은 주로 물고기들로, 주로 한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성부는 경제적으로 물산의 生産地라기 보다는 消費地域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성부는 왕궁과 공서에 필요한 물산과 함께 거주인들의 일상 용품을 전국에서 조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본 한성부의 물산은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료품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 운반할 수 없는 채소와 과일 종류를 중심으로 한 園藝農業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성안은 물자의 교환을 위한 商業과 함께 일상용품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는 工業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성부는 商工業과 消費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1) 商工業活動을 위한 空間

서울의 생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는 크게 農業·商業·工業으로 나눌 수 있다. 생업의 성격상 농업은 성 밖에, 상업은 도시계획에 의해 중부 雲從街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공업은 특정한 구역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업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130여 종류의 장인들이 京工匠人으로서 公署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주로 왕궁과 공서의 물품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주인들을 위한 그 밖의 사공업은 상당히 미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성부에서 農業을 위한 공간은 주로 성 밖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성 안에서는 채소 이외의 다른 농업을 금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채소는 많이 모자랐던 모양으로, 성 밖에서 더 많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현(1439-1504)의 『慵齋叢話』에 의하면, 왕십리에서는 순무·무우·배추 등 야채종류가, 청파역과 노원역에는 토란이, 이태원에서는 多蓼와 紅芽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세기 뒤의 문헌인 박지원(1737-1805)의 『禮德先生傳』에는 왕십리에서는 배추, 살

꽃이 일대에서는 무우, 서대문 밖 석교에서는 가지·오이·수박·호박이, 연희궁동에서는 고추·마늘·부추·파·염부추가, 청파에서는 미나리가, 이태원에서는 토란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²⁹⁾ 지리지에 나타나 있는 기록도 이것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商業을 위한 공간으로는 場市로서 鐘樓街·梨峴·七牌·昭義門 밖이 있었으며³⁰⁾, 시전은 국가의 부역을 맡는 有分各廩과 그렇지 않은 無分各廩으로 구분되는데, 유분각전은 六矣廩(육의비전) 외에 31개전 50개소에 이르렀으며, 무분각전으로는 外長木廩의 9개전 17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³¹⁾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태종 12년부터 14년까지 건립된 시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까지 좌우행랑 800간, 돈화문에서 정선방동구까지 행랑 472간, 경복궁에서 종묘 앞까지 좌우행랑 881간, 종루에서 경복궁까지, 창덕궁에서 종묘 앞 누문까지, 그리고 남대문 앞과 뒤가 모두 480간, 그 밖에 종루에서 남대문까지와 종묘 앞 누문에서 동대문까지 좌우행랑 간수미상으로 총 3,000여간에 달한다. 그리고 그 위치는 거의 모두 중부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工業을 위한 공간으로는 京工房과 私工房으로 구분되는데 『經國大典』에 의하면 京工匠으로서 130여 종류가 각 공서에 배치되었으며, 그 밖에 私空房으로서는 금방·은방·옥방·두동방·능라방·주피방·궁방·시방·사모방·각대방·도자방·석경방·모의방·필방·입방·연죽방·안경방 등이 나타나고 있다.³³⁾ 이러한 사실은 한성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 준다.

4. 人間과 生活風俗과 그 認識

1) 戶口 및 人口의 推移

1428년(세종 10)에 한성부 오부의 호수로는 16,921호에, 인구 103,328명으로서, 호당 평균 가구수는 6.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저에는 1,601호에 인구 6,044명으로, 호당 평균 가구수는 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로 보아 도성 안의 가구는 성 밖의 가구에 비해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집의 크

29) 손정목,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pp. 106-107.

30) 『동비고』(서) 권 2.

31) 『동비고』(서) 권 2.

32) 손정목, 앞 책, 74.

33) 『동비고』(서) 권 2. 장방

기도 도성 안의 것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의 호구와 인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도표 18> 한성부의 인구변천

	오 부 호 수	인 구	호당평균
1606 (선조 39)	12,965		
1648 (인조 26)	10,066	95,569	9.5
1657 (효종 8)	15,760	80,572	5.1
1669 (현종 10)	23,899	194,030	8.1
1678 (숙종 4)	22,740	167,406	7.4
1717 (숙종 43)	28,356	185,872	6.6
1723 (경종 3)	31,859	199,018	6.2
1726 (영조 2)	32,747	188,597	5.8
1729 (영조 5)	32,372	196,305	5.8
1732 (영조 8)	35,768	207,733	6.4
1735 (영조 11)	33,836	187,756	5.2
1738 (영조 14)	35,576	194,432	5.5
1741 (영조 17)	34,886	189,985	5.6
1747 (영조 23)	34,153	182,584	5.3
1750 (영조 26)	34,652	180,090	5.2
1753 (영조 29)	34,953	174,203	5.0
1756 (영조 32)	38,108	197,452	5.2
1759 (영조 35)	36,467	172,166	4.7
1762 (영조 38)	39,926	183,782	4.6
1765 (영조 41)	39,344	194,634	4.9
1768 (영조 44)	38,770	188,884	4.9
1771 (영조 47)	38,497	196,219	5.1
1774 (영조 50)	38,531	197,558	5.1
1777 (정조 1)	38,593	197,957	5.1
1780 (정조 4)	38,742	201,079	5.2
1783 (정조 7)	42,281	207,265	4.9
1786 (정조 10)	42,786	195,731	4.6
1789 (정조 13)	43,929	189,153	4.3
1792 (정조 16)	43,963	189,287	4.3
1795 (정조 19)	43,890	191,501	4.4

	오 부 호 수	인 구	호당 평균
1798 (정조 22)	44,945	193,783	4.3
1807 (순조 7)	45,707	204,886	4.5
1837 (헌종 3)	45,640	203,925	4.5
1852 (철종 3)	45,678	204,053	4.5
1864 (고종 1)	46,565	202,639	4.4

- * 참고 : 1723년(경종 3) 오부: 25,844호, 인구 147,772명, 호당 평균 가구수 5.7명
1768년(영조 44) 경외도: 1,679,865호, 인구 7,006,248명, 호당 평균 가구수 4.2명

위의 자료에 의하면 1648년(인조 26)에 오부의 호구수가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636년에 일어난 丙子胡亂의 영향으로 파괴되었던 시가가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의탁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렇기 때문에 호당 평균 가구수가 9.5명으로 최고치를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전후 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로 보인다. 그 9년후인 1657년에는 戶數가 약 50% 증가하여 전후의 복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구는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호당 평균 가구수가 9.5명에서 5.1명으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 12년 후인 1669년(현종 10)에는 호구가 50% 증가한 반면 인구는 200% 이상 증가하여 호당 평균 가구수도 5.1명에서 8.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9년 후인 1678년부터는 호수가 증가하는 비율보다는 인구의 증가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호당 평균 가구수가 점차 감소하여, 5-6명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783년을 기준으로 하여 호당 평균 가구수가 4-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한성부는 점차 小家族 多家口의 성격을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관료 이외의 生計方式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생계방식인 商工業의 活性化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商業地域의 확대, 즉 한성부에서의 장시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성부의 생활풍속은 또한 거주민들의 구성을 통해서도 유추될 수 있다. 궁궐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서울에서는 관원이 800-1,000명 정도³⁴⁾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官衙에 부속된 아전수는 약 270여명³⁵⁾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왕궁에는 侍女·宦官·占術家·巫堂 등을 포함하여 약 4,000여명³⁶⁾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그 밖에 관아에 속해 있는 京工匠의 匠人이 129종에 2,840여명으로

34) 손정목, 앞 책, 62

35) 손정목, 앞 책, 62

추산된다. 그리고 商人으로는 입전의 경우 도원수가 약 70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전의 경우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면,³⁷⁾ 모두 67개의 전에 약 4,700여명의 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 각 공서의 奴婢가 약 3,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⁸⁾ 이것으로 보아 한성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6,410여명의 직업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이 이루고 있는 호수는 대체로 한성부의 전체 호수인 40,000여호의 1/3에 이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한성부의 생활양식은 官僚의 生活樣式과 商工人들의 生活樣式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2) 身分에 따른 儀仗과 禁制

한성부는 身分制度和 品階制度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의 수도라는 성격 때문에, 다양한 儀仗과 服飾으로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1) 官服의 形態, 빛깔, 材料, 治粧品の 무늬

가. 초참·상참·조계 모두 흑의를 입는다.

나. 사헌부의 서리나 통례원의 서원이 감찰 및 조하할 때에는 공복을 입는다.

다. 어가를 시종하고 조하하는 여러 신하들의 복색은 상복을 따르며, 임금이 나가 행차할 때에는 모두 공복을 입는다.

라. 1품관은 붉은 생초의 衣裳과 蔽膝(조복이나 祭服을 입을 때 가슴에 늘이는 형질)이며, 白紗 中單(옷속 속에 있는 소매 넓은 두루마기에 구름과 학을 수놓은 금고리에 술 있는 띠(雲鶴金環綬)를 사용한다. 祭服은 푸른 생초 옷에 붉은 생초 하의와 폐슬이고, 중단과 금환수이며 方心曲領이고, 공복은 紅袍요, 平常服은 沙羅綾緞으로 한다.

마. 胸背는 대군은 麒麟⁴⁰⁾이고, 王子君은 자연 광택 있는 문채의 孔雀이며 무관은 虎豹모양이다. 2품관의 朝服·祭服·公服·常服은 위와 같은데 胸背는 雲雁을 수 놓았고 대사헌은 해대이며, 무관은 위와 같다. 3품관 벼슬 이상은 위와 같고, 중단은 수리가 앉아 있는 수놓은 고리에 술 있는 띠 盤雕 銀環綬이며, 祭服은 의상 벼슬이 1품과 같고, 중단은 위와 같으며 白絹의

36) 손정목, 앞 책, 62

37) 유성교, 「한국상공업사」, 『한국문화사대계 3권』,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5 p. 1112

38) 손정목, 앞 책, 100

39) 「동여고」 권 2.

40) 예전 관복의 가슴과 등에 수놓은 것. 약 20cm 사방이 되는 것을 대는데 그것을 흉배라고 한다. 그것이 관직의 고하에 따라 다른 것은 여기의 본문과 같다.

方心曲領은 위의 1품관과 같다. 공복 정3품은 紅袍요, 종 3품은 靑袍이며 常服은 당상관은 위와 같다. 胸背는 白鷗을 수놓았는데 무관은 熊비이다. 4품관 조복의 벼슬 이상은 위와 같으며 중단은 까치 수놓은 것이고, 은고리에 술 있는 띠 은환수이다. 祭服도 같고, 조복은 백초 방심령이요, 공복은 靑袍이다. 5, 6품은 벼슬 이상이 위와 같으며 중단은 까치 수놓은 구리로되 고리에 술 있는 띠 동환수이요, 祭服은 같고 조복은 백초 방심곡령이며 공복은 靑袍이다. 7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 이상은 위와 같으며 중단은 계겹 동환수이고 백초 방심곡령이며 공복은 녹포이다. 錄事는 단령(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이고, 여러 학당의 생도도 단령이고 유학은 청금이고 서리는 단령이며, 별감은 푸른 단령인데 平常服은 直領이다. 궁궐 안의 각 차비는 直領이며 인로는 푸른 단령, 나장은 푸른 반비의이다. 형조와 사헌부의 전옥은 검은 단령이며 사간원의 사는 누런 단령이며, 조예는 푸른 단령이다. 공주와 옹주의 시종은 초록색을 사용한다.

바. 당상관 이상은 唐紅袍인데 대소 조정 의식에는 현록색 사단이며 胸背는 운학을 수놓았는데 무관도 위와 같고, 융복엔 남색 침리를 입는다. 당하관 3품 이하는 紅袍였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소 조정의식에는 현록색 저련이고 胸背는 白鷗이다. 무관도 위와 같은데 융복에는 청현색 침리를 입는다. 錄事의 홍단령은 지금 폐지되었으며, 대소 조정 의식에는 현록색 저견이고 胸背는 白鷗이다. 별감은 紅直領인데, 대소 조정 의식에는 녹색 直領을 입는다. 수복은 紅直領이다.

사. 文·武士庶人이 모두 푸른 색을 숭상하게 하는데, 대소 인원은 문·무직위를 물론하고, 표의가 앞은 땅위에서 3촌이며 뒤는 땅 위에서 2촌이다. 소매는 길이가 손을 지나고 다시 돌아서 팔목에 이르며 소매통은 넓이가 1척이고 소매부리는 7촌이다. 서면은 표의가 앞에는 땅 위에서 4촌이며 뒤에는 땅 위에서 3촌이고,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며 소매통 넓이는 8촌, 소매 부리는 5촌이다.

아. 말은 1품에서 9품까지 조복에 백포인데 祭服에도 같다.

자. 화혜⁴¹⁾는 1품에서 3품까지는 조복에 흑피혜이며 祭服에도 같고 공복엔 흑피화이다. 당상관으로 平常服에는 금화를 신는다. 4품에서 9품까지의 조복과 祭服은 위와 같으며 공복에는 흑피화를 신는다.

41) 화(靴)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긴 신이요, 혜(鞋)는 보통 발등까지도 안 올라오는 신이다.

(2) 탈것의 種類와 禁制

- 가. 종 1품 이상 및 기로소의 당상관은 평교자를 타고, 종 2품 이상은 초헌을 타며, 당상관은 호상 안룡을 가진 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정 3품 당하관은 안룡만을 가지게 한다.
- 나. 경성 안에서 서민이 말을 타는 것을 금한다
- 다. 안구는 1품에서 9품까지는 대랑피변안에 녹색 언치 아되 단첨보로이며 골추락 삼조수아를 장식한다. 3품 상관은 대랑피변안에 녹색 언치이며 종친의 3품 이하는 유청색을 사용하여 골추락 3조수아를 장식하고 기타의 3·4품은 백록각 변안에 2조수아이며, 5·6품은 백록각 변안에 1조수아이고, 7·8·9품은 백록각 변안이다.
- 라. 당하관의 말 안장에 은실로 새겨 장식한 자나 당하관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 남기울로 처벌하며, 중관(내시부의 관원들)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그 관품의) 당상·당하를 막론하고 당하승교의 준례에 의하여 처벌한다.
- 마. 종친 집의 아내와 딸이나 당상관 집의 어머니·아내·딸·며느리와 음관 집 신부 외에, 방처럼 된 교자를 타는 자거나 관사 및 당하관 이하 집에서 혼인하는 사람으로서 사라·능단·계담을 사용하는 자와 사족집의 부녀·아동이나 서울 기생은 금하지 않는다.
- 바. 당하관의 말 안장에 은실로 새겨 장식한 자나 당하관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 남기울로 처벌하며, 중관으로서 교자를 탄 자는 그 관품의 당상·당하를 막론하고 당하승교의 준례에 의하여 처벌한다.
- 사. 중인 및 서민은 방처럼 된 교자의 사용을 금함

(3) 帽子, 갓, 冠, 巾과 裝飾, 이엄의 材料와 禁制

- 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은 갓에 옥정자로 장식하고 감찰은 수정 정자를 장식하며, 한산직의 당상관은 공석회합이면 사모를 쓴다.
- 나. 신임 원임의 대신·장신이 융복·군복을 입을 때에는 갓에 옥로를 장식한다.
- 다. 1품관의 조복은 오랑목잡인데 제복도 같으며, 공복에는 복두를 쓰고 평상복에는 사모를 쓴다. 관자·갓끈은 금·옥을 쓰고, 갓의 장식은 은으로 하는데 대군도 하며, 이엄은 주단·초피를 사용한다. 2품관의 조복은 4량이요, 대사헌은 해태모양을 붙이고, 집의 이하는 모두 목잡을 사용한다. 당상 3품관은 3량이며, 종친은 6품관에 이르기까지는 생초·초피 耳掩을 사용한다. 당하관 정3품 이하로 9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생초·鼠皮·耳掩을 사용하며,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이요, 7품에서 9품까지는 1량인데 모

- 두 목잡이다. 祭服도 같고 공복엔 복두, 평립복엔 사모이다.
- 라. 錄事는 빨 있는 平頂巾이요, 여러 학당의 생도들은 검은 베巾을 쓰며, 書吏는 빨 없는 평정건, 別監은 자색건, 世子宮 하인은 푸른 건을 쓰며 平常服엔 朱黃草笠을 쓴다. 궁궐 안의 각 差備(하인)는 푸른 모자요, 길 인도하는 자는 자색건, 羅將과 隸는 검은 건을 쓴다.
- 마. 당상관 3품 이상은 烏紗帽(검은 사모)에 紋紗角(무늬 있는 사각)이며 戎服엔 紫笠이었는데, 七紗笠으로 고쳤다. 당하관 3품 이하는 오사모이며 윙복에는 黑笠에 수정 갓끈이다. 錄事는 오사모, 守僕은 검은 건이다.
- 바. 왕자가 데리고 다니는 자는 자색 난삼에 늦쇠 패를 차고, 의정부와 승정원의 경연에서는 납패이며 내각의 인로는 금패이다.

(4) 帶와 笏의 材料와 禁制

- 가. 대는 1품관의 조복에는 서대요, 祭服·공복·常服에도 같으며, 사복엔 붉은 실띠이다. 정2품관의 조복에는 정삼금이며 종2품은 소금인데 祭服·常服도 같다. 공복엔 여지금이며 사복엔 붉은 실띠이다. 3품관의 조복에는 정삼은, 종3품은 소은이며, 祭服과 평상보도 같고, 정3품의 공복에는 여지금, 종3품은 흑각이고, 사복에는 붉은 실띠이다. 4품관의 조복에는 소은이며, 平常服도 같고, 공복엔 흑각이다. 5품에서 9품까지의 조복에는 흑각이며, 祭服·공복·平常服도 같다. 錄事와 여러 학당의 생도들과 서리는 실띠이며, 별감과 궁궐 안 각 차비도 실띠이고, 인로는 자색 난삼이요, 나장·조예도 실띠이다.
- 나. 홀은 1품에서 4품까지는 조복에 아홀이며, 祭服과 공복에도 같고, 5품에서 9품까지는 조복에 목홀이며 祭服과 공복에도 같다. 패옥은 1품에서 3품까지는 조복에 반청옥이며 祭服에도 같고, 4품에서 9품까지는 조복에 반백옥이며 祭服에도 같다.

(5) 日常生活의 禁制

- 가. 사찰 외에 진채를 사용하지 못함
- 나. 화석을 사용하지 못함
- 다. 술그릇 이외에 금은 청색 그림의 흰 사기의 사용을 금한다.
- 라. 주렴칠기를 사용하지 못함
- 마. 사화봉, 금은 노포화의 사용을 금함
- 바. 염초를 사용하는 것을 금함
- 사. 마소의 밀도살을 금한다.

아. 주철 용기 사용을 금함

(6) 服飾禁制

가. 대소 인원으로서는 홍·회·백색의 표의와 흰 갓이나 붉은 말언치의 사용을 금한다

나. 위로 궁궐 안에서부터 아래로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관대를 갖춘 의복)이나 용복(군복) 외에는 토산(국산)이 아니면 입지 못하는데, 금군이나 호위군관이나 의녀와 침선비는 지나친 의복을 금하지 않으며, 사족집 부녀들의 의복은 모두 그 남편의 직품에 따라서 하게 한다. 곁에 대단금을 사요 하거나, 수봉차·금옥차·주전가환을 사용하는 자는 신부에 한하여서만 금하지 않으며, 사단·농주를 물론하고 무엇이나 무늬 있는 것은 일체 엄금하는데, 범한 자는 시민도 모두 같은 법률로 시행한다. 역관이나 장사치는 의주에서부터 먼저 목베어 매단 후에 장계하여 알리며, 물건은 목책 밖에서 불태운다.

다. 사족 부녀·아동·경기는 사라·농라·계담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서인의 남녀는 홍자의 자대 금은 청화 주기 비단실로 짠 옷감, 옥마노 호박 명박 청금의 황동의 말안장 장식, 삼등자, 사피를 금한다.

마. 서민이나 중인은 수건·수과·비누 같은 종류나 세쇄물은 사라농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금하지 않으며, 혜와 같은 사피의 종류나 세쇄한 장식물 같은 것은 금하지 않는다.

바. 서민이나 중인은 심령회색의 옷이나 양구 백색의 옷이거나 사족집 부녀자, 아동과 서물기생의 잠종 장식인 금은 주옥은 금하지 않는다.

사. 정병, 서인의 백색옷은 금하지 않는다.

아. 사족의 의복을 침리 및 치마가 13폭을 지나는 일이 없으며, 서인의 의복은 9승 포목에 침리와 치마가 12폭이다. 사족의 초립은 50축이며 또 마미립에 죽립을 붙인다. 서인은 초립이 30축이며 또 죽직립과 승결립이 있다.

자. 대소 인원으로서는 홍·회·백색의 표의와 흰 갓이나 붉은 말언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7) 상업에 관한 금제

가. 비밀히 금물을 파는 자 중의 활세포·채문석·후지·초피·토초피·해달피의 유를 파는 자는 장 1백과 도형 3년에 처하며, 중한 자로서 철물·우마·금은·주옥·보석·염초·군기를 파는 자는 교형에 처한다.

나. 시중 가격을 농간질하여 올리는 자와 두승을 정한 규격대로 만들지 않는

자나 나무 공이로 짚은 나쁜 쌀을 외상이라고 하여 억지로 전보는 사람들에게 파는 자 등은 평시서에서 주관하되, 시정이나 마을의 범금인을 본서에서 물건을 거두어 놓아 주지 말고 형조에 보고하여 죄를 주게 하며, 도고 계방(도매가게)인 자는 형장을 때려 정배보낸다.

다. 전안(시전 명부)에 매어 있지 않고 난전(노점) 보는 자는 경조에서 주관한다.

라. 여러 군문에 속한 군병들의 제조 물품은 난전에 관한 처벌로 시행하지 않는다.

마. 호위청 관계의 난전은 법사(형조와 한성부)에서 바로 처벌을 시행한다.

바. 점포를 잠그고 철시하는 자는 그 주도자를 형장을 때려 정배보내고 모두 금단한다.

사. 3법사인 형조·사헌부·한성부에서는(관원이) 집에서 금단하지 못하며, 또 어두운 밤에 금단하지 못하며 경성 금표 밖에 대하여 금단하지 못하며 난전과 같은 금지조례 외에는 다른 금지 조례를 지어 내지 못한다. 시각을 생각해서 정하여 넘는 일이 없게 하며 먼저 금지 조례로 거듭 엄중히 당부하여 알려 준 후에 금단하는데 매달 6차씩 한다. 사시 명절에는 모두 금령 중 장형 1백까지는 늦추어 준다.

아. 법사의 목패 외에 추가로 지패 내는 일은 일체 엄금하며 감찰이 출패하는 일을 일체 금단한다.

(8) 冠婚喪祭 및 社會倫理에 관한 禁制

가. 하는 자와 사족집 부녀자로서 산간 수변에 유연하거나 친히 야제나 산천, 성황사, 신문의 제사를 거행하는 자와 과거장의 이전·복예로서(사실을) 누설하고 연락하는 자나(이런 일을 보고서도) 짐짓 단속하지 않는 자는 모두 형장 50대를 때린다.

나. 지나치게 사채를 받는 자는 모두 장형 60을 한다.

다. 경성 10리 안에 입장하는 자는 원통의 수목을 도벌한 범죄로 같이 논죄하며, 강제로 시일을 정하여 파 옮기거나, 농침의 화소나 외안금표 안에 투장하는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 보낸다.

라. 조정 관원으로서 내어 보낸 궁녀나 수사에게 장가드는 자와 문서를 뜯어서 다시 종이를 만드는 자는 장형 50대에 처한다.

마. 관사인이나 당하관 이하의 집에서는 혼인에 사라·능단·계담을 금함

바. 선비로서 윤리를 문란하게 하거나 탐장죄를 범한 자나 사족집 부녀로서 실행한 자와 다시 3번 시집간 자는 녹안을 만들어 이조·병조 및 사헌부와 사

간원으로 공문을 보낸다.

사. 성밖 10리에서 모여 술마시는 자거나 8인 이상이 안주와 음찬을 가지고 노는 자는 차린 자를 치죄한다.(금군인 경우에는 금하지 않는다)

아. 가로상에서 술주정하는자는 치죄한다.

자. 국상 때 풍악치고 기생 데리고 노는 자나 국기 정일 및 치제일에 풍악을 울리는 자를 모두 엄금하고 죄를 다스린다.

차. 여자 복색으로 변장하고 남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장형 1백을 시행하여 섬중으로 귀양보낸다.

(9) 一般的인 禁制

가. 분경하는 자를 금하니, 도목정⁴²⁾ 시행하는 날을 정한 후에 비조·병조 당상관의 집과 도목 정사후 서경⁴³⁾이 있기 전에 양사관원의 집에는 동성 6촌이나 이성 4촌 및 혼가가 아닌데 출입하는 자를 금하며, 아조·병조의 여러 장수나 당상관리·병방승지·사헌부·사간원의 판결사의 집에는 동성 8촌이나 이성 처가 친척 6촌과 인린인이 아니고서 출입하는 자는 장 80대를 쳐서 3천리 밖으로 유형한다.

나. 잡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자는 장형 1백대를 친다.

다. 과장에서 과거 보는 이가 남에게 차작하거나 대신 지어주는 자는 모두 장형 100에 도형 3년에 처한다. 과장에서 과거 보는 이가 남에게 차작하거나, 대신 지어주는 자는 모두 장형 1백에 도형 3년이다. 일설에는 과거보는 이가 과장에서 책을 가지거나 빌려서 짓고 대신 지어주는 자는 2회의 과거를 못보게 한다고도 한다.

라. 과거장의 이전·복으로서 사실을 누설하고 연락하는 자나 이런 일을 보고서도 짐짓 단속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장형 50에 처한다.

마. 빈 대궐의 소나무를 몰래 찍은 자는 연한 없이 변방 먼 곳으로 정배 보낸다.

바. 경성 10리 안에 소나무를 찍는 죄를 범한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며, 사산 금표 안에서 나무뿌리나 잔디뿌리를 채취한 자나 토석을 채취한 자는 모두 산 소나무를 베인 준례에 의하여 논죄하며, 함부로 밭갈이 한 자는 궁이나 민가의 산밭을 강제로 차지한 자로 논죄한다. 경성 10리 안에 동쪽은 대보동·수유현·우이천·상하벌리·장위송계교에서 중량포에 이르기까지 하

42) 매 해 6월과 12월에, 관리들의 성적을 고사하여 승직과 강등을 결정하는 일

43) 관리의 임명이 있는 다음 대간이 다시 인정 서명하는 일

천으로 한계를 삼으며, 남쪽은 중량포 전관교·신촌·두모포에서 용산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류로 한계를 삼으며, 북쪽은 대보동·보현봉·저설현·아미현·연서구관기·대조리에서 석관현 서남쪽 물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산등으로 한계를 삼으며, 서쪽은 석관현·시위동·사천도관·성산·망원정에서 마포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강류로 한계를 삼아서, 그 안에 입장하는 자는 원릉의 수목을 도벌한 범죄로 같이 논죄하며, 강제로 시일을 정하여 파 읍기고 농침의 화소⁴⁴⁾나 외안금표 안에 투장한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보낸다.

사. 신무문 밖과 면악 아래의 흠 파는 곳을 조사하여 엄금한다.

아. 마소의 밀도살 죄를 범하는 자를 금하되 삼의사나 역관·일관·사자관·산원·화원 등 잡과 출신의 사람 및 아전은 금하지 않으며 錄事와 금군도 금하지 않는다.

자. 성 안에서 구치⁴⁵⁾하는 자는 병조로 잡아다가 곤장을 때린다.

차. 어염집을 빼앗아 드는 자는 도형으로 3년 정배한다.

카. 자기가 제 몸을 판 자도 아내를 판 범죄와 같이 하며 산 자도 같은 죄로 본다.

타. 집을 헐어버리고 시골로 가는 자를 일체 엄단한다.

파. 각 관청의 관원 및 하인들이 면신·벌레·허참 등의 일로 재물을 거두는 자는 관리가 재물을 받았으되 법률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받은 재물을 계산하여 논죄하며, 여러 군문의 장교 및 군교가 면신레라 하며 거두어들이는 자는 중한 죄목에 의하여 곤장을 때린다.

하. 능원 묘소의 나무를 범하여 찍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면 범인이나 능관을 경중으로 구분하여 논죄한다.

3) '風俗' 條의 內容 ⁴⁶⁾

현재까지 알려진 漢城府의 지리지자료 가운데에서 풍속조를 싣고 있는 자료는 「신동람」과 「동여지」이외에 「동여고」와 동지로서 「훈주지」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수록된 풍속조의 내용은 대체로 「신동람」의 것이 15-16세기, 「훈주지」의 것이 17세기 초, 「동여지」의 것이 현종대(1659-1674)로서 16세기 말, 「동여고」

44) 왕릉의 주위에 불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불을 놓아 경계를 삼게 한 곳.

45) 거마를 빨리 몰고 다니는 일

46) 장철수, 「지리지 한성부 '풍속' 조의 서술기준과 원리」,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가 고종대(1864-1896)의 초기로서 19세기 중반에 해당된다. 그 내용을 전거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사서: 後漢書: 天性柔順(後漢書 天性柔順 異於三方 故孔子欲居之)(동람)(동여지)(동여고)
- 미확인 중국문헌: 涵虛子: 崇尚信義 而篤儒術(涵虛子 隣國皆崇尚信義 而篤儒術釀成中國之風) (동람)(동여지)(동여고)
衣冠制度悉同中國(同上 衣冠制度悉同中國 故曰詩書禮樂之邦 仁義之國) (동람)(동여지)
- 국내문헌: 지지: 人物英明(地志)(동여지)
풍속첩: 詩書教士(風俗帖 詩書教士 嘗⁴⁷⁾ 必三年 雖奴僕軍卒亦許行以成其孝 士大夫宗家子 皆立家廟 以祭其先)(동여지)
以門閥爲重(同上 國俗以門閥爲最重 先世嘗爲文武官者 謂之 兩班 世列兩班者 非其類則皆不爲之禮貌 兩班子弟只許讀書 不習雜藝 或所行不善 則國人共非之)(동여지)
- 중국 시부: 倪謙 등루부: 民物阜成(倪謙 登樓賦)(동람)(동여지)
張寧 대평관시: 魯國多賢(張寧 大平館詩)(동람)
陳鑑 희청부: 詩書之藪(陳鑑喜晴賦 朝鮮爲東藩重國 禮義之區 詩書之藪 故特爲之稱首)(동람)
禮義之區(大明陳鑑賦 朝鮮爲東藩重國 禮義之區 詩書之藪 故特爲之稱首)(동여지)
董越 조선부: 婚 謹媒 (大明董越朝鮮賦序 婚 謹好媒 俗恥改嫁 再嫁所生失行婦女之子及庶妾之子 雖多學亦不得入士流登仕版)(동여지)⁴⁸⁾
金滉 시: 比屋淳 (金滉詩 慕華漸覺如華同 比屋淳 盡可封)(동람)
- 미확인 시부: 前人 詩: 詩書教士(前人詩 玉帛朝天心懇切 詩書教士意雍容)(동람)
衣冠禮讓(前人詩 家家門戶農商業 處處衣冠禮讓容)(동람)
- 무전거 서술: 士女終一(士族之女 夫死不再婚 皆守信終身也)(동여지)
俗尙淳厚(훈주동지)
婚喪相救 一從契憲 如有會集 少長咸聚 坐必以齒高 官異爵則隨品別坐(훈주동지)

47) 董越의 朝鮮賦에 의하면 嘗자는 喪자라야 되며, 문맥상으로 보아도 喪자라야 맞는다.

48) 주 3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許琮의 風俗帖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自古至今 未嘗有悖理亂倫之行 名臣輩出 旌閭相望 都下遠近 咸稱洞風之美(훈주동지)

萬曆丙戌丁亥年 行呂氏鄉約 自異爵下至士庶 會講約條 一依藍田所定 但惡籍則古今異 宜難遽行 姑先行善籍 而勤勉 每月約正率 直月以下 講論約條 厥後外議 不一 未久而廢(훈주동지)

조선 전기의 「신동람」에서는 모두 9개의 표제문 가운데에서 7개를 중국의 자료(涵虛子, 後漢書, 倪謙, 張寧, 陳鑑, 金湜)에서 그리고 2개를 미확인 자료인 前人詩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동여지」에서는 모두 10개의 표제문 가운데에서 6개를 중국 자료 즉 涵虛子·後漢書·倪謙·陳鑑·董越에서, 3개를 국내 자료 즉 지지·풍속첩에서, 나머지 1개는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서술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풍속서술은 주로 중국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당시의 한성부는 신생 수도로서 아직 뚜렷한 풍속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풍속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할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속의 서술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5세기에 이루어진 後漢書의 東夷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天性柔順”이라는 표제문과 함께 “천성이 유순한 것이 다른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자도 살기를 원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한 관점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漢城府 풍속의 뿌리를 東夷에 두고 있다. 둘째 漢城府 풍속의 역사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셋째 수도로서 漢城府는 동이의 풍속을 대표하고 있다. 넷째 漢城府의 풍속은 이미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다. 다섯째 東夷나 漢城府의 풍속은 이미 공자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이다. 여섯째 따라서 중국의 풍속보다는 우월하다. 일곱째 漢城府의 풍속은 비록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지만 중국의 풍속과는 다르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풍속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의 지리지 편찬자들이나 지배계층에게는 바로 이 역사성을 의식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관점으로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용들은 儒術과 같은 단어를 비롯하여, 仁義·信義·詩書·禮樂·禮儀 등과 같이 유교적 가치기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 편찬자들이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중국사람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풍속을 유교적 윤리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편찬자들의 관점이 반영된다. 주자학적 유교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당시의 지배계층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점은 당연하다.

풍속에 대한 유교적 윤리관의 강조와 함께, 중국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서술방식은 또한 풍속서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자료에서 인용된 내용은 바로 그 인용자체가 풍속조를 기재하는 서술관점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또한 국내 자료에서 인용된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유교적 가치관에 기준을 두고 국내외의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기재 방식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정창수는 “조선조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무수히 인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조선조 지식인들에 의한 조선조의 정통성의 인식이 주로 중국(명)의 정치적·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정신적 승복이라는 맥락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⁴⁹⁾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文化事大主義的 觀點’과는 견해를 달리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인용방식은 유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조선에서 볼 수 있는 유교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 중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 지지 않는다는 객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평가가 중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므로써, 국내의 자체 평가에 객관성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기재방식의 객관성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시의 동양적 세계성속에서 우리의 풍속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교적 풍속의 보편성은 국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중국의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漢城府가 당시의 수도로서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주자학을 지배이념으로 삼고 있는 지배집단의 근거지로서, 국제문화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의 반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로서의 漢城府의 풍속은 지배이념을 강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 점에서 다른 지역의 풍속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내의 자료에서 인용된 내용들과 함께 미전거 서술의 내용들은 중국의 자료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 중기의 지리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전의 추상적인 내용과는 달리 비교적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이다. 즉 「동여지」에 나타난 常民·賤民階層의 三年喪, 士大夫 宗家の 祠堂建立과 祭禮, 兩班과 門閥의 성격과 행실, 혼인 중매와 再嫁 및 그 소생의 사회적 지위, 士族 부녀자의 再嫁忌避 등과 함께 「훈주지」에 나타난 婚喪契, 사회윤리와 기강, 향약의 실시와 내용 등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이나 생활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또한 유교적 생활윤리나 사회윤리와 함께 사회계층의 분화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9) 정창수, 「조선조의 지리지에 나타난 사회설명 의 원리」, 『한국사회와 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78-80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는 이미 漢城府가 수도로서 일정한 풍속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또한 유교적 지배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6세기 말에는 이미 당시의 지배이념인 유교적 생활과 사회의 원리가 漢城府에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훈주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呂氏鄉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시대의 초기와는 달리 당시의 지배계층에 의해서도 漢城府의 풍속을 서술하는 일정한 기준과 관점이 형성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의 기록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풍속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국인들이나 국내인들에 의해서 파악된 추상적인 내용과 함께 기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풍속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밝히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재방식은 풍속을 추상적인 동시에 구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여고」 漢城府의 풍속조 다음에는 “이상의 풍속은 一國의 풍속으로서 대개는 같으나, 특히 京都에서 성하며 또한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적는다”고 하는 세주를 달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곧 수도의 풍속은 바로 나라 전체의 풍속인 동시에 근본이라는 관념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수도라는 특수한 지역의 풍속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함께 국가전체의 풍속을 대표하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수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기재된 한성부의 풍속조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지역의 풍속은 특정한 시기에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둘째, 그러므로 풍속은 현재의 현상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과거의 것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한성부의 풍속은 다른 풍속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서술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울린 계층, 즉 유교적 소양과 생활양식에 익숙해 있는 관료들의 풍속을 통해서 얻어진 직관적, 인상기적인 것들로서 주로 한시와 같은 문학작품에 표현된 것들이다. 넷째 풍속은 당시 사회에서 支配理念으로 삼고 있는 지배적 윤리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성부는 지배계층과 정책집단이 집중된 된 수도로서, 초기부터 유교 및 주자학적인 사회윤리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다섯째 풍속은 당시의 세계문화관에 비추어 볼 때 보편성을 띤 것과 지역적 특수성을 띤 것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성격을 띤 내용은 외래적인 지배이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성격상 추상성을 띤 수 밖에 없는데 비해서,

특수성을 띤 것은 직접적인 생활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된 한성부의 풍속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왕궁이 있는 한성부는 首都로서,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국가 전체의 풍속을 대표하고 있다. 그것은 왕궁을 비롯하여 국가, 행정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외교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성부는 지배집단과 정책결정 집단의 본거지로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관료문화와 행정문화의 집합지라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왕궁문화의 성격과 함께 보다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성부의 풍속은 농업과 같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지연의식과 함께 관혼상제와 같은 통과의례를 통한 공동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중기에 이루어진 「훈주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성부의 풍속은 농업적 생활양식에 바탕을 둔 지방문화와 지방 행정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주현의 문화와도 상당히 다른 도시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성부의 풍속은 주로 관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관료주의적, 신분계층적 생활양식으로 상당히 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심화된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 조선시대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윤리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 엄격하게 비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성부는 중기 이후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적 性別文化로 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적 지배이념의 확산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5. 時間과 그 認識

1) 歷史的 事件

(1) 1426年(世宗 8)의 火災

2월 15일과 16일 2일에 걸쳐 발생한 화재로서, 경시서, 전옥서를 비롯하여 복변 행랑 160간, 종로 동행랑 200호와 행랑 8간, 중부 1,630호, 남부 30호, 동부 190호를 소실하고, 32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으로서, 그 피해 규모는 당시 전 가구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이 사건은 천도후 경도로서의 면모를 겨우 갖추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어 금화도감의 설치와 함께 경도의 새

로운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각 행랑에 방화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가와 민가의 사이에 방화대를 설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⁵¹⁾

(2) 燕山君의 民家 撤廢

연산군이 등극한 뒤 많은 공해와 圓覺寺, 成均館 등을 연회장으로 꾸몄을 뿐만 아니라, 1504년(연산군 10)부터는 2년에 걸쳐 도성 내외의 민가 10,000여호를 철폐하여 수렵장을 꾸몄다. 이때 추방된 사람은 모두 20,550명에 이르며, 여기에 묶여진 전답은 5,700여결에 이른다.⁵²⁾

(3) 1592年(宣祖 25)의 壬辰倭亂

임진왜란의 피해는 南大門·敦化門·弘化門·明政門·明政殿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그 피해 규모는 75-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궁궐과 공해의 파괴는 모든 기록문서의 灰塵으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와 문화의 단절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⁵³⁾

(4) 1619年(光海君 11)의 火災

4월에 어물전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주위의 1,000여호를 태운 사건으로, 건국 후 최대의 화재로 알려지고 있다.⁵⁴⁾

(5) 1636年(仁祖 14)의 丙子胡亂

12월에 한성에 쳐들어 온 호군에 의해서 향교동 입구에서 광통교 부근에 이르는 좌우의 점포와 인가를 불태웠으며, 그 밖에 御庫·戶曹·兵曹·선혜청 등의 관아를 불태웠다.⁵⁵⁾

2) 革廢公署의 分析

혁폐공서는 19세기의 문헌인 「동비고」에 비로소 나타나는 편목으로서 공서의 변화, 즉 社會制度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런 점에서 지리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를 통해

50) 손정목, 앞 책, 389

51) 손정목, 「소방제도」, 『서울육백년사 1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pp. 426-428.

52) 김기원, 앞 책, 280-283.

53) 김기원, 앞 책, 282-283.

54) 손종목, 앞 논문, 427.

55) 손정목, 앞 논문, 427. 김기원, 앞 책, 279-283.

서 생활문화나 풍속의 시간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계기와 내용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비고」(사)에 의하여 연대가 확인된 공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초에 설치하여 없어진 공서 : 사평부, 수녕부, 충익부, 경흥부, 장예원(영조때 혁파), 제생원, 내부시, 풍저창, 의염창, 가각고, 해전고, 사은서, 사축서(인조 15년 혁파), 소격서(선조 임란후 혁파), 도염서, 전함서, 전연사, 경북궁제거사, 의례상정소, 태청관, 응방(숙종 41년 혁파), 승녕부(정종 때 설치, 태종때 혁파)
- (2) 태종때에 설치하였다가 없어진 공서 : 공안부(태종때 혁파), 인녕부, 경승부, 인수부, 귀후서(정조 때 혁파), 북학(현종 2년 혁파)
- (3) 세종, 세조때에 설치하였다가 없어진 공서 : 전제상정소(세종 26년 설치), 종학(세종 1년 설치, 연산군때 혁파), 언문청(세종때 설치), 내경청(세조때 설치)
- (4) 연산군때 설치하였다가 없어진 공서 : 연방원, 취홍원, 두탕호청사, 호화고, 전비사, 추혜서, 광혜서, 포염사, 봉순사, 비용사
- (5) 기타 : 보민사(영조 40년 설치)

이 가운데에서 국초에 설치하였다가 없어진 공서는 대부분이 고려의 제도를 본따서 만들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 밖의 것들도 연산군때에 설치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초기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혁파된 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공서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限時的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사회가 변하거나, 또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혁파된 것들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고찰에 의해서 사회와 생활의 변화내용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서울 生活風俗의 역사는 朝鮮時代의 王宮과 公署를 중심으로 한 都城內와 城外의 생활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성내와 외의 자연환경과 그 이용방법에 대한 변화는 바로 서울의 생활풍속의 변화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의 生活風俗史는 도성을 중심으로 한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생활풍속사는 國土開發史와 社會制度史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국토개발사와의 관계는 보다 밀접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생활문화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생각과 관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생활문화와 풍속은 서울의 空間과 人間과 時間이 통합하여 이루어 내는 綜合的 文化現象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의 생활풍속은 공간-인간-시간의 綜合的 構成體系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地理誌 資料를 통해서 연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리지 자료의 篇目과 內容을 통해서 생활풍속사의 연구방법에 대한 序說的 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국토개발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에 비추어 결론을 맺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국토개발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⁵⁶⁾ 서울의 역사는 4단계로 나뉘고 있다. 제1기는 1392년(太祖 1)에서 1494년(成宗 25)까지의 102년간으로서 朝鮮王朝의 創業時代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중요한 변화로는 1426년(世宗 8)의 火災를 들고 있다. 제2기는 1495년(燕山君 1)부터 1724년(景宗 4)까지의 300년간이다. 이 가운데에서 전반 150년간(1495-1645)을 서울의 수난기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중요한 변화로는 燕山君時代의 暴政과 壬辰倭亂, 光海君時代의 火災, 그리고 丙子胡亂과 黨色을 들고 있다. 제3기로는 1725년(英祖 1)부터 1863년(哲宗 14)까지의 139년간으로서 商業地域의 擴張期로 보고 있다. 이 때에 확장된 상업지역으로는 梨峴·松峴·七牌의 3대시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기는 1864년(高宗 1)부터 1910년(純宗 4)의 48년간으로서 近代都市로의 變化를 중요한 사건으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의 변화는 서구문물의 도입 또는 동아시아적 세계질서에서 세계적 질서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변화로서,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조선시대 서울의 생활문화 및 풍속사는 그 내적인 공간의 변화에 의하여 대체로 앞의 3단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 따라 생활문화 및 생활풍속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우선 儒敎 理念의 定着期라고 하겠다. 그것은 한성부를 수도로 선정하면서 왕궁과 공서, 그리고 상공업과 주거지를 일정한 계획과 원칙 아래 건설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에 있는 개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왕궁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 권위지역으로, 동서지역은 사직과 종묘, 문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지역으로, 그리고 중부는 관아를 중심으로 한 행정지역과 상공업지역으로, 그리고 남쪽은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위에 따른 일정한 관념을 지역적으로 차별화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을 수도로 선정할 때에는 우선 지맥과 수맥에 대한 해석인 風水地理思想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 불교를 대표하는 無學과 유교를 대표하는 鄭道傳 사이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

56) 김기원, 앞 책, 279-287

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도전의 해석이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풍수사상에 대한 유교적 재해석이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坊里制인 행정구역도 구체적으로 지맥과 수맥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은 유교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잘 나타내 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어서, 이른바 ‘儒國土思想’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건국 후 최대의 사건으로 알려진 화재로 인해서도 흔들릴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지배계층에서 표방하고 있는 유교이념에 대한 집착은 강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생활문화는 官僚-儒敎의인 양식을 강하게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성부의 체제는 그 이후 전개될 조선시대의 앞날에서 유교적 생활양식의 위상을 암시해 준다.

제2기는 그 동안 이룩해 놓은 儒敎的 政治體制가 內外的 狀況에 의해서 의해서 混亂된 時期로 보인다. 內的 狀況으로는 燕山君에 의해서, 外的 狀況으로는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에 의해서 그 동안의 이룩된 儒國土는 특히 사회제도의 물질적 표현물, 즉 왕궁과 공서, 사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지와 시전 등에 걸친 거의 모든 한성부의 시설물들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유교적 이념과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유교적 생활관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지배집단의 의식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 후반부의 150여 년간은 모든 사회제도의 복구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와 함께 기존의 관료-유교적 생활양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출현하여, 이른바 ‘民間-儒敎的 生活樣式’이 보편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冠婚喪祭와 祖上崇拜를 위한 親族組織이나 同宗마을이 출현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血緣意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生活儒敎’ 또는 ‘儒敎의 生活化’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제3기는 건국 초기부터 제도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던 한성부의 商工業이 擴張되는 시기로서, 관중심의 상공업이 상당한 정도로 자유로워진 시기이다. 건국 초부터 한성부가 상공업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리라는 것은 그 위치가 바로 한성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한 금제보다는 상공업에 관한 금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던 것이 한성부에서 상공업 지역의 확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상공업이 활기를 띠에 따라 생활풍속도 상당히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土農工商’의 신분질서의 혼란과 함께 상업이 국가의 경제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질서의 분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종래의 官僚-商業的 生活樣式이 民間-商業的 生活樣式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중기에 이룩한 유교적 생활양식은 신분질서와 사회질서의 혼란에 따라 또 다른 형태

의 생활양식, 즉 상업적 생활양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배경을 나타내 주는 학문적 경향이 바로 朝鮮時代 後期の 實學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